

규제 일몰기한 일괄설정을 위한
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」 등 2개 부령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연 월 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그 법령등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바,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의 규제조문에 대해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주기적 정비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영속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하였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, 제4호, 제5호,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6조제9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호(중전의 제9호) 중 “별표 10”을 “제30조 및 별표 10”으로 한다.

2.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허용 기준: 2022년 1월 1일

4. 제29조의2에 따른 임시운항허가 요건: 2022년 1월 1일

5. 제4조의3 및 별표 1의3, 제7조 및 별표 1의4, 제12조 및 별표 4, 제29조 및 별표9에 따른 교육·시험·검정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: 2022년 1월 1일

7. 제35조 및 별표 11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: 2022년 1월 1일

8.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

정지처분 기준; 2022년 1월 1일

제2조(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규제의 재검토)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제12조의5 및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:

2022년 1월 1일

2. 제12조의6 및 별표 5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: 2022년 1월 1일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6조(규제의 재검토)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<u>하여야</u> 한다.	제46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야</u> ----- --.
1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(현행과 같음)
3. (생략) <u><신설></u>	2. <u>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허용 기준: 2022년 1월 1일</u>
<u><신설></u>	3. (현행과 같음)
	4. <u>제29조의2에 따른 임시운항 허가 요건: 2022년 1월 1일</u>
	5. <u>제4조의3 및 별표 1의3, 제7조 및 별표 1의4, 제12조 및 별표 4, 제29조 및 별표9에 따른 교육·시험·검정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: 2022년 1월 1일</u>

<u><신 설></u>	<u>7. 제35조 및 별표 11에 따른 등 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: 2 022년 1월 1일</u>
<u><신 설></u>	<u>8.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 상레저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기준; 2022년 1 월 1일</u>
9. <u>별표 10</u>에 따른 수상레저사 업등록기준: 2014년 1월 1일	6. <u>제30조 및 별표 10</u>----- --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0조(규제의 재검토)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)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/u> <u>1. 제12조의5 및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: 2022년 1월 1일</u> <u>2. 제12조의6 및 별표 5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: 2022년 1월 1일</u>